(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60081호

2026년 안동시 푸드테크 상용화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와 안동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외식 및 푸드테크 기업, 식품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푸드테크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2026년 안동시 푸드테크 상용화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06월 22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6년 06월 22일(월)~ 07월 10일(금)

☐ **사업기간**: 2026년 6월~11월

* 10월 말까지 사업수행을 진행하여, 11월 내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를 기준으로 잔금 집행예정

☐ **지원규모**: 컨소시엄 당 최대 75백만 원**(총 1개 컨소시엄 선정)**

*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의 **20% 이상 기업 자부담 필수**

☐ **지원내용**

- ○ 외식 및 식품 제조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기반 상용화 모델 개발 및 실증
- ○ 푸드테크기업 기술선도형 또는 지역식품산업 수요기반형 분야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jin940123@gepa.kr)**

☐ **선정방법**: 평가점수 고득점 기업 순 선정

☐ **문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 · 기업지원팀

- ○ 전화: 054-470-8562
- ○ 이메일: jin940123@gepa.kr

2. 추진절차

1. 사업공고 및 접수
2026. 6. 22.~ 7. 10.
경제진흥원, 신청기업

2. 지원기업 선정
2026. 7.
경제진흥원

3. 협약체결
2026. 7.
선정기업

4. 과제수행
2026. 7.~11.
선정기업

5. 선금신청 및 지급
2026. 7.~8.
선정기업→경제진흥원

6. 중간점검
2026. 9.
경제진흥원 → 선정기업

7. 최종평가
2026. 11.
안동시, 경제진흥원 → 선정기업

8. 결과보고 및 잔금 신청
2026. 11.~12.
선정기업→경제진흥원

9. 서류 검토, 지급
2026. 12.
경제진흥원→선정기업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분야**: 외식 및 식품제조기업 현장 내 경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 과제

구분	내 용
푸드테크기업 기술선도형	푸드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추진과제 제안
지역식품산업 수요기반형	지역외식 및 식품제조 기업 수요조사에 따른 분야와 품목 사전 지정 후 푸드테크 기업이 개선방안 제안

* 예시: 스마트 · AI 기반 경영 및 제조혁신 시스템, 식자재 관리 솔루션, 조리용 주방로봇, 제조 및 포장 관련 기술적용 등

* 지역외식업 수요기반형은 사전 수요조사 후 지정과제 선정 예정

☐ **지원대상**: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하고 있는 외식 및 식품제조 기업과 푸드테크 기업 간 컨소시엄

- ○ **(컨소시엄 구성)** 주관 기관을 중심으로 참여 기관을 추가하여 구성
  - **(주관 기관)** 푸드테크 기업 / **(참여 기관)** 안동 소재 외식 및 식품제조 업체
- ○ 컨소시엄의 형태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주관 기관(푸드테크 기업)과 참여 기관(식품기업 및 외식기업) 각 개 기관 참여 필수 (예시: 1:1, N:1, 1:N, N:N)

< 컨소시엄 체계 >

예시❶		예시❷		
주관 기관	참여 기관	주관 기관	참여 기관	참여 기관*
푸드테크 기업	식품기업 및 외식업체 (수요처)	푸드테크 기업	식품기업 및 외식업체 (수요처)	기업 또는 협·단체 등

* 기타 기업/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필요 시 참여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하며, 컨소시엄 내 식품기업 및 외식업체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안동시 이외의 타 시·군에 소재한 주관 기관(푸드테크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사업 기간 내(최종 평가일까지) 안동에 연구소 또는 지사 등의 설립이나 이전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참여 기관(식품기업 및 외식업체)은 반드시 안동시 소재의 업체이어야 하고, 3년 이상 영업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가 안동시이어야 함
- ○ 단, 3년 미만의 외식업체인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선정심의위원회(정성평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함. (예외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내 '예외 인정 요청서*(자유양식)'를 별도 첨부하여 제출할 것. 심의 결과에 따라 참여 불가 처리될 수 있음)
  - 해당 기술에 대한 사업화 계획 및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 창업 이후 매출, 고객 수요 등 일정 수준 이상 실적을 보유한 경우

* 예외 인정 요청서(자유양식)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술 도입 배경 및 식품기업 및 외식업체의 적용 계획
- 창업 이후 매출 또는 고객 성과 지표(근거자료 포함)
- 식품기업 및 외식업체의 지속가능성 또는 기술 적용 여건 등

☐ **지원내용** 식품기업 현장 솔루션 기반 상용화 모델 개발 이후, 현장 맞춤 모델 실증 및 데이터 분석하는 사업(1~2단계) 진행

(1단계) 과제발굴 및 상용화모델 개발
- 식품기업 요구사항 발굴 및 현장 분석
- 협력과제 기획
- 솔루션 기반 상용화모델 개발

▶

(2단계) 실증 및 데이터분석, 최적화
- 현장 맞춤형 상용화 모델 실증 테스트
- 효과성 및 경제성 등 데이터 분석

1단계 **식품기업 현장분석 및 솔루션 기반 상용화모델 개발**

- ○ **(지원내용)** 상용화 기술개발, 제품개발, 연구개발 비용
- ○ **(결과물)** 상용화모델 설계(안), 실증 시나리오 및 효과성 검증 계획(안), 시제품, 특허출원 등

2단계 **식품기업 현장 솔루션 기반 상용화모델 실증 및 데이터분석**

- ○ **(지원내용)** 식품기업 맞춤형 모델 실증 및 데이터 검증, 최적화 비용
- ○ **(결과물)** 상용화모델 실증 결과보고서, 효과성·경제성 분석 결과 보고서, 최적화 푸드테크 시스템(완성품) 등

☐ **지원규모**

- ○ 지원금: **75백만원**
- ○ 20% 기업 자부담은 필수이며, 자부담 금액 지정된 계좌로 입금 확인 시 지원금 교부
  - * 예시) 지원금:자부담=8:2이고, 지원금을 최대로 지원받는다면
    (지원금) 75,000천원, (자부담) 18,750천원, (총 사업비) 93,750천원
- ○ 지원금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지 않은 비용 기준으로 지원되며, 부가가치세는 주관 기관 또는 참여 기관이 전액 부담

☐ **상세 지원항목**

목	세목	과목해소	비고
101 인건비	01 보수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사업비 (지원금과 자부담의 합) 40% 이내에서 산정
107 퇴직급여	퇴직급여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304 연금부담금 등	01 연금부담금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직원에 대한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임차비	
		2.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금 총액의 15% 이내
		3. 사업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4.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등의 소모성 비용	
		5.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6.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	
		7. 사업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1.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2. 사업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행사프로그램 개최 비용	
201 일반운영비	14. 회의비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개최 장소에서 다과, 식사 제공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202 여비	01 국내여비	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207 연구개발비	03 시험연구비	1.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214 수선유지교체비	05 수선유지비	1. 시설・장비 운영・유지・보수비, 운영비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사업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4. 신청방법

☐ **신청 · 접수**

- ○ **접수기간: 2026. 06. 22.(월)~ 07 10.(금) 18:00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
- ○ 신청서 교부 및 안내: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대표 홈페이지 (https://www.gepa.kr/) 사업공고 참조
-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jin940123@gepa.kr)
  - 주관 기관 또는 참여 기관이 다수일 경우, 각 항목별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거나, 압축하여 업로드
  - 접수문의: 054-470-8562((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 · 기업지원팀)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필수	사업신청서	시스템 내 정보 입력
	컨소시엄 구성현황	별지 1호 (엑셀양식)
	사업계획서	별지 2호
	성실이행확약서	별지 3호
	컨소시엄 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4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관 기관, 참여 기관 각 1부
주관 기관	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2025년 결산재무제표	
	안동시 사업연계 확약서	별지 5호 (해당기업만 제출)
참여 기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예외 인정 요청서	외식기업 업력 3년 미만인 경우만 제출

5. 선정절차

☐ **선정방법**

- ○ 신청서 접수기업 정량평가(30점), 정성평가(70점) 합산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1개사 선정 및 예비합격기업 선정(합산점수 60점 미만시 지원 제외)
  - * 미달 시, 추가 모집 공고 후 평가점수(서류) 고득점 순 선정
- ○ **서류심사**(정량심사)
  - 업체 평가 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정 예정기업의 3배수 선정

구분	항목	배점	비고
주관 기관	매출액	10점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기준
	재무건전성	5점	부채비율 기준 (재무제표)
	기업규모	5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기준
참여 기관	매출액	5점	과세표준증명원 등 제출자료 기준
	업력	5점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 주관 기관 또는 참여 기관이 복수인 경우 각 항목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
** 단, 참여기관에 대한 평가항목은 참여 기관 내 식품기업 및 외식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함

- ○ **정성평가**(선정심의위원회)
  -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프레젠테이션 발표평가를 통해 1개 컨소시엄 선정

항목	배점	주요 평가 요소 예시
사업목표의 명확성	10점	문제정의 및 목표 설정의 타당성
수행역량 및 조직 구성	10점	컨소시엄 구성, 전문성, 역할 배분 적정성
기술개발 내용	15점	기술 차별성, 독창성, 구현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10점	사업화 전략, 확장성, 지속성
실증 계획의 구체성	15점	실증 환경, 측정지표, 운영계획의 명확성
예산의 적정성	5점	예산 배분의 타당성, 자부담 구조 등
지역경제 기여도	5점	고용창출, 기술 확산, 지역 내 유통 가능성 등

☐ **선정 결과 안내**

-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6. 지원금 지급 및 사용기준

☐ **지원금 지급**

- ○ 본 사업은 안동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며,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의 보조금 집행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 지원금은 협약 체결 이후, 선금 신청 시 자부담이 입금된 내역을 함께 증빙하여야 지급될 수 있음

☐ **지원금 사용 기준**

- ○ 본 사업의 자부담금(총사업비의 20% 이상)은 주관기관(푸드테크 기업)이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함. 단, 참여기관(식품기업 및 외식업체)이 일부 금액을 분담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부담 금액을 전액 부담해서는 안 됨. 자부담 구조는 협약 체결 시 컨소시엄 간 협의하여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식품기업의 100% 자부담 분담 구조는 사업 목적상 인정되지 아니 함.
- ○ 자부담을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이 각각 부담하는 경우는 각각의 기관 명의의 신규 통장에 자부담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지원금 계좌는 주관 기관 명의의 통장을 신규로 발급받고 자부담과 지원금을 각각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 지원금 및 자부담금은 각각의 계좌와 연계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 지원금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주관 기관 또는 참여 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 ○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지원금+자부담)의 40% 이내에서 산정 가능함
- ○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금 총액의 15% 이내에서 산정 가능하며, 그 외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함

☐ **지원금 정산**

- ○ 지원완료(10월 말) 후 15일 이내 관련 지침에 따라 결과보고와 잔금신청을 하여야 하고, 잔금의 지급은 최종평가와 결과보고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제외대상**

- ○ 기업의 부도
- ○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또는 대표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지원하는 경우
-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의사항**

- ○ 안동시 이외의 타 시·군에 소재한 주관 기관(푸드테크 기업)이 확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체 참여하였으나, 최종 평가(11월)까지 이전(移轉)에 대한 증빙(지사 또는 연구소 주소가 명기된 사업자등록증, 지점 등록 포함된 사업자등록현황 증명 등)이 불가할 경우 선금지급분이 환수 될 수 있음
- ○ 본 사업은 지역 내 식품기업 및 자영 외식업체의 기술 도입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지역 독립 운영성과 사업효과가 명화히 입증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 ○ 참여희망 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복신청, 참여 제한 대상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지원신청서 제출 시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이 되지 않는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 적격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계획을 보류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 ○ 사업 참여 기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선정결과(점수 포함), 합격 또는 탈락 사유 등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공고 예정

8. 사후관리

☐ **기기 유지 · 보수**

- ○ 실증을 위해 설치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하자보수' 등의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고객지원 연락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함

☐ **사업장 유지 및 변경사항 통지**

- ○ 참여기관(식품기업 및 외식업체)은 사업장 유지, 기술 활용 상태 등에 대한 주기적 확인 및 변경사항 발생 시 경제진흥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지원금 환수조건**

- ○ 실증을 위해 장비를 지원받은 식품기업 및 외식업체(참여기관)는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폐업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환수 또는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단, 천재지변, 사업 양도, 지위 승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선정 취소 및 전액 환수 조치됨